

세무학회지
제7권 제3호 2006년 9월 pp.335~362
한국세무학회

소비세 분야의 세제개혁 방향

김유찬* · 윤태화** · 서희열***

〈요 약〉

전세계에서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조세구조 변화의 특징이다. 소비세와 소득세 분야의 조세를 비교할 때 어느 한쪽이 논리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조세를 통하여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통한 재정수요의 조달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가 OECD의 표준 면세범위 수준에 비교하여 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OECD의 개별국가들도 영국, 불란서 등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모습은 OECD 표준과 매우 다르다. 수평으로 우리나라의 면세제도와 OECD 국가들의 제도, 특히 영국의 영세율 및 기타 제도, 프랑스의 의약품에 대한 저율과세, 기타 OECD 국가들의 경감세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그다지 넓은 것은 아니고 소득분배의 역진성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조세구조, 부가가치세, 재정수요, 면세, OECD 표준, 영세율, 경감세율, 역진성

*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yckim57@kmu.ac.kr, 016-9750-6422, 제1저자

** 경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thyoon@kyungwon.ac.kr, 011-9721-5417, 공동저자(교신저자)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suhhy810@hanmail.net, 011-724-5351, 공동저자(교신저자)

I. 서 론

소비세 분야의 세제개혁이 의미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자본시장개방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조세제도와 조세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개혁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세구조가 변화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감당해 주어야 하는 조세수입 기능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제도 내부의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특소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 개별소비세 분야의 개혁이 의미를 가진다.

이 소비세 분야의 개혁은 최근 미국에서 근본적 세제개혁안이 제시되며 소득세에서 소비세를 주된 세목으로 하는 조세구조의 변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지면서 더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OECD국가들의 세수통계로 보면 소득세에서 소비세로의 전환은 아직 시작된 추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양극화 등으로 향후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에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수확대 방안은 세율 인상 방안이외에도 면세범위의 조정 및 간이과세기준의 조정을 통하여도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III장에서 다루기로 하며 이에 앞선 II장에서는 소비세 분야의 국제적 변화 동향을 정리한다.

이어지는 IV 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제도 내부의 문제로서 과세단위의 문제, 세금계산서 제도, 그리고 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하여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V장과 VI장에서는 국민건강과 세수증대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주세 및 담배소비세 개편방향과 특소세 제도의 개편방향을 다룬다.

II. 소비세 분야의 국제적 변화 동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표 1〉 주요 OECD국가의 부가가치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라별	1980	1990	2000	2002
한국	3.7	3.7	4.0	4.6
프랑스	8.6	8.1	7.6	7.3
독일	6.2	5.9	6.9	6.5
영국	5.2	6.0	6.8	6.9
미국(sales tax)	1.9	2.2	2.3	2.2
OECD 평균	5.1	6.1	6.9	6.8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

또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도 OECD 평균에 비하여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총세수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다.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나라이나 미국에서는 소매매상세적 성격의 sales tax가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같이 비교하였다.

<표 2> 주요 OECD국가의 부가가치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라별	1980	1990	2000	2002
한 국	22.0	20.4	17.0	18.9
프랑스	21.1	18.8	16.8	16.7
독 일	16.6	16.6	18.4	18.0
영 국	14.7	16.6	18.2	19.4
미국(sales tax)	7.0	8.0	7.6	8.2
OECD 평균	15.3	17.4	18.5	18.7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

이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바 우선 우리나라의 총조세수입/GDP 비율이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으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오랫동안 10%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또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부가가치세수입/총소비세수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 주요 OECD국가의 기타 특소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라별	1980	1990	2000	2002
한 국	6.6	4.8	4.6	4.6
프랑스	3.4	3.8	3.7	3.6
독 일	3.5	3.3	3.3	3.6
영 국	4.7	4.6	4.6	4.3
OECD 평균	4.8	4.2	4.1	3.9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

<표 4> 주요 OECD국가의 기타 특소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라별	1980	1990	2000	2002
한 국	39.5	26.5	19.7	18.8
프랑스	8.4	8.7	8.1	8.1
독 일	9.3	9.2	8.8	10.1
영 국	13.3	12.5	12.3	12.0
OECD 평균	16.6	13.0	11.7	11.3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

부가가치세와 기타 특소세를 함께 고려한 전체 소비세의 대 GDP 비율이나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지난 20-30년간의 장기적인 추세에서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현재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평균 세율은 약 17.8% 이다. 그중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 7%, 일본 5%, 스위스 7.6% 등을 들 수 있을 정도이다. OECD 회원국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가도 있고, 인하하는 국가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세율은 1994년의 17.1%에서 2004년의 17.8%로 정체상태에 있다(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

유럽 주요 국가들의 최근 10여년간 부가가치세율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유럽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 변동 현황

나라별	도입초기 표준세율	1994	2000	2003
한 국	10.0	10.0	10.0	10.0
프랑스	20.0	18.6	20.6	19.6
독 일	10.0	15.0	16.0	16.0
영 국	10.0	17.5	17.5	17.5
OECD 평균		17.1	17.7	17.8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

Ⅲ.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수기반의 확대방안

1. 부가가치세의 세율조정에 대하여

가. 문제의 제기

(1) 부가가치세와 직접세의 선택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문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그자체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아니다. 그 보다는 재정적으로 세수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세분야의 세율인상과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어느 대안이 경제적 부작용을 적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다. 혹은 정부지출규모를 축소하고 세수도 이에 비례하여 줄인다고 할 때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중 어느 분야를 유지하고 어느 분야의 세율을 먼저 인하할 것인가를 선택할 경우도 있다. 결국 조세(세수)구조를 직접세위주로 혹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세 위주로 갈 것 인가의 문제라고 압축된다.

(2) 부가가치세의 전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입법권자의 의도(부가가치세의 법률적 전가)와는 달리 실제적인 경제적 부담은 시장에서의 공급자(사업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힘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의 경제적 힘이 강하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근로자나 원자재 공급자에게 전가시킨다. 공급자의 경제적 힘이 강하여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전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면 이는 입법권자의 의도대로 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전가는 부분적으로는 사업자가, 그리고 다른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부가가치세의 부분적 전가).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기업)가 부담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 또 부가가치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이는 물가상승, 임금상승 및 내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또한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반면에 동일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경우도 기업에 직접 부담을 주거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내수감소로 이어지고 이 또한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같은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중에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경제성장에 우호적이나의 판단은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여 세부담이 쉽게 전가되는 경제체제에서 이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¹⁾

나. 세율조정시 고려사항

정치경제적으로 대규모의 정부지출이 필요(예를 들어 통일 등)하여 세수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면 부가가치세의 선택은 그 대안 이 다른 대안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선택이 다른 대안의 선택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만일 부가가치세의 선택이 대규모 세수확보가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적 논리를 무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직접세 분야의 세율 인상에 비하여 무엇이 좋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쁘냐를 생각하고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율

1) 결국 잘 고안된 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시뮬레이션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 경제 모델에서 채택된 각종 가정이 현실에 부응하지 않으면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전가되는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압력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임금협상 당사자들이 물가상승 압박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소비자(가계)들의 소비성향이 부가가치세 및 물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에 대한 가정이 모델에서 모두 현실에 적합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모두 잘 반영된 모델은 잘 찾기 힘들다. 특히 중앙은행이나 임금협상 당사자들의 행위는 정책 변수의 범주에 속하므로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 경제 모델이 올바른 논리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는지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되지 않는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는 동 모델이 올바른 논리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경제적 효과는 예를 들어 경제 성장이나 고용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몇 %일가 하는 것을 수량적으로 표시해준다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의 인상이 직접세 류의 세율인상보다 문제가 있다면 물가의 경쟁적 인상의 가능성, 소득분배의 역진성, 탈세의 문제이다.

(1) 물가의 문제

(가) 독일의 사례 (김유찬, 2006)

독일에서는 과거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된 6번의 사례가 있었다. 이 6번의 사례에서 1979년의 경우와 1993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단행된 해의 1년간의 물가상승률은 그 전의 해에 비하여 높지 않다. 또 6번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단행된 해의 물가상승률의 평균은 1.95%로서 1959년 - 2005년 동안의 독일의 물가상승률의 평균인 2.34%에 비교하여 더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물가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보인 결과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독일의 경우 두 가지 점을 주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먼저 독일은 지금까지 6번의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에서 모두 단 1% point 만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다음으로 독일의 연방은행은 유럽 중앙은행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매우 신뢰성 있는 화폐정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대하여는 어떠한 종류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가가치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고, 또 독일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면 물가상승의 우려는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은행의 화폐정책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므로 독일의 경우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지가 있다면 부가가치세율은 인상하면서 물가상승의 압력을 잠재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소득분배의 역진성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는 소비자의 소득에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소득분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소득에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세제는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세수중립적인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전체경제의 소비수요 감소를 유발하여 경기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며 동시에 복수세율제도를 도입하여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면 소득분배의 역진성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을 12%로 인상하며 일부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을 8%로 인하하면 부가가치세의 소득분배에 대한 역진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복수세율에 수반하는 다소의 징세 및 납세준용비용의 증가는 감수하여야 한다.

(가) 영국의 사례²⁾

OECD 국가 중 일부나라에서는 면세제도 이외에 중요한 생필품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핵심 품목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기초 생필품

2) 영국 재무성 면담자료

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캐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표 9> 참조)을 들 수 있으며 그 중 영국을 대표적으로 보면 영국은 기초식료품, 아동의류, 상수도, 신규주택의 건설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영세율 적용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서 영국의 재무성은 이로 인한 세수손실규모(조세지출규모)를 2004/200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55억 파운드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2004/2005 회계연도의 영국의 부가가치세 총 세수가 735억 파운드인 것에 비추어 보면 매우 큰 규모이다. 영국은 이 분야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도입초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및 연료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하였었다. 이 에너지와 연료에 대한 영세율은 1993년에 17.5%의 표준세율 적용대상으로 바뀌었고 그 후 1997년에 5%의 경감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다.³⁾

현재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복수세율구조이며, 농산품, 공익사업을 위한 용역 등의 경우에는 표준세율 대신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6> 주요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표준세율 및 감면세율(%)

국가별	표준세율		감면세율	영세율 존재여부*
	최초	현행		
오스트리아	16	20	10, 12	
벨기에	18	21	6, 12	yes
덴마크	10	25	—	yes
핀란드	11.1	22	8, 17	
프랑스	20	19.6	2, 5.5	
독일	10	16	7	
그리스	16	18	4, 8	
아일랜드	16.4	21	4.3, 13.5	yes
이탈리아	12	20	4, 10	yes
네덜란드	12	19	6	
노르웨이	20	24	12	yes
포르투갈	16	19	5, 12	
스페인	12	16	4, 7	
스웨덴	11.1	25	6, 12	yes
영국	10	17.5	5	yes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

* 수출에 제공되는 영세율이 아니라 특정한 국내공급에 대한 영세율을 의미함. 영세율 적용 대상은 아래의 <표 9>를 참조

3) 이는 EU의 규범에 따른 것인데 EU에서는 개별국가들이 영세율 적용품목을 신규로 채택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경감세율 적용품목의 확대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다. 소결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국제적인 조세구조 변화의 특징이다. 개별국가들은 자본유치 노력에 따른 조세유인책의 하나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율인하 또는 비중축소의 경향이 많다. 미국도 또한 지출세 혹은 단일세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세로의 이행이 정치경제적으로 납세자들의 저항을 가법계한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비세가 직접세 분야보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이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어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와 소득세 분야의 조세는 어느 한쪽이 논리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로 대표되는 소비세제도 세부담이 계속 전가되는 시장경제사회에서 소득세보다 가볍다고 보기 힘든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 발생한다. 소득과 관련된 각종 기본적인 소득공제 또는 특별공제 및 조세감면 등으로 인한 과세베이스의 침식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응능과세 측면에서, 그리고 소득분배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의 소득세의 소비세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성도 현재로서는 그다지 큰 설득력을 가지는 논리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세(세수)구조를 소비세(부가가치세) 분야의 비중이 더 커지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조세를 통하여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통한 재정수요의 조달을 고려할 수 있다. 큰 규모의 재정수요를 조달할 수 있는 세목은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고려하면 부가가치세가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경쟁적 물가인상과 이를 통한 임금인상의 계기를 주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하여 면밀하게 대처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 소득분배구조의 역진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주요 생필품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도입하고 탈세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의 조정

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현황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존재하는 경제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소비세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등)에 대하여 면세를 제공한다. 그 외에 사회적으로 적정수준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의료서비스와 주거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면세가 제공된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또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면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의 계산이 어려운 생산요소거래(임금, 토지, 금융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1977년 도입당시에 비하여 현재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항목은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반면 조세특

례제한법상의 면세규정은 1977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세항목보다 많이 늘어나 있는 실정이다.

나. OECD 주요국가의 면세범위

OECD에서는 회원국들이 준용하도록 표준적인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면세범위를 우리나라의 면세범위와 비교하면 다음표와 같다.

〈표 7〉 우리나라 면세범위와 OECD표준면세범위 비교

구 분	면 세 대 상
OECD 표준면세 (standard exemption)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 임대, 복권, 토지와 건물의 공급,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인 활동, 자선사업 등
OECD 표준면세를 우리나라에서 과세	도박, 상업용 건물의 임대와 공급, 상업적 문화사업
OECD 표준면세 이외의 우리나라의 면세부문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공중전화, 담배(200원 미만), 국내제작이 곤란한 스포츠 경기관련 수입품 및 철도용 물품, 면세제,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학교의 급식, 농·어업용 유류, 농·어업의 경영 및 작업대행용역, 미식용농·임·축·수산물,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를 참고하여 김유찬(1998), 27쪽, <표 9>를 수정한 것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가가치세체계를 지니고 있는 유럽국가 대부분의 경우, OECD 표준면세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며 개별 나라들은 이 OECD 표준 범위에 추가하여 면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표준 면세범위에 대한 개별 국가별 차별화

	표준면세범위 이외의 면세	표준면세범위에 대한 과세
오스트리아		임대(개인주택)
벨기에	법률서비스	—
캐나다	육아, 극빈자를 위한 법률구조, 도선영업, 도로·다리의 통행료, 표준정부서비스	복권, 도박, 상업용지와 건물의 공급·리스, 국내우편서비스
덴마크	여객수송, 장의업, 예술작품, 여행 안내업	극장·영화관
핀란드	공연업, 문학과 예술작업에 대한 판권, 장 남에 의한 상거래, 공동묘지업	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상업용지와 건물의 리스(선택적)
프랑스	비영리기관의 기념관, 묘지 등의 건축 및 유지보수작업, 선물거래, 친환경경제생물질 등	부동산 임대, 환자수송서비스
독일	—	—

	표준면세범위 이외의 면세	표준면세범위에 대한 과세
그리스	법률서비스, 저작권, 예술활동, 공공방송 및 TV, 공공의 상수공급	문화상품
아이슬란드	스포츠, 여객수송, 작가, 작곡가, 장의업, 여행알선업	—
아이랜드	여객수송, 방송, 공공수도업, 스포츠 경기 입장료, 아동복지업, 장의업과 여행안내업	상업용 부동산의 장기임대, 토지와 건물 의 공급
이테리	지역여객수송, 장의업	상업용 토지와 건물의 공급과 임대(표준세율)
일본	사회복지사업, 장애인용품의 공급, 공공서비스, 파생상품	의료업, 교육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금융 서비스, 부동산 공급
룩셈부르크	—	—
멕시코	잡지, 금화 및 은화, 지분, 국제 화폐거래, 금, 저작권, 여객운송업, 농업어업	우편서비스와 보험, 부동산 임대, 금융서비스
네덜란드	화장·장의업, 공공방송, 스포츠작곡가, 작가, 언론인의 서비스	문화서비스, 상업용 부동산 임대, 부동산 공급, 스포츠 숙박시설의 이용
뉴질랜드	—	우편서비스, 혈액, 인간의 장기, 의료서비스, 환자수송업, 자선활동,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 활동, 문화서비스, 스포츠, 보험과 재보험, 부동산 임대(주거시설 제외), 복권과 도박, 토지와 건물의 공급(5년 이상 동안 주거시설로 사용해온 토지와 건물 제외)
노르웨이	여객수송, 장의업, 호텔	우편서비스
포르투갈	농업	—
스페인	문학과 예술작업에 대한 판권	소비가가 대금을 치르는 일부 문화서비스
스웨덴	공공 TV와 라디오, 저작권, 공동묘지업, 사회사업	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특정 상업용건물의 임대
스위스	아동 및 청소년복지업, 사회사업, 사회안전서비스, 일정조건하에 대리 근로자의 공급, 중고품	주차, 특정임대업, 특정 은행서비스, 치과 기공업
터키	해상인도와 보수작업, 사업용 항공업 또는 철도수송업, 사회복지사업, 농업용수	교육과 문화서비스, 신문, 책, 잡지(경감세율), 우편업, 상업용 건물의 매각, 임대, 라디오와 TV방송, 병원, 복권과 도박
영국	화장·장의업, 스포츠 경기, 특정고급호텔 서비스	새 상업용 빌딩의 공급은 완료일로부터 3 년 동안 표준세율로 과세. 허가된 클럽의 도박기계와 도박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를 참고하여 김유찬(1998), 21쪽, <표 7>를 수정한 것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가가치세의 소득에 대한 역진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의 <표 8>에서 보여준 면세제도 이외에도 경감세율 및 영세율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개별 국가들의 동 제

도는 아래의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표 9> 경감세율 및 영세율 해당 품목

	영세율	경감세율
오스트리아	—	농업, 책, 식료품, 임업, 병원, 신문, 예술, 문화, 임대수송, 농민에 의한 와인공급(12%)
벨기에	장애인용 자동차, 신문과 주간지	농업, 음식, 상수도공급, 의약품, 서적, 창작 예술품, 장의업, 장애인용품, 여객운송업, 쇼, 호텔, 주거용 건물 수리업, 석탄과 코크스, 특정한 노동집약적 서비스
캐나다	약, 기본 식료품, 수출품, 금융업(주로 비거주자 대상), 농어업 생산물, 의료설비, 국제여행과 운송업, 국제기관과 직원, 귀금속	—
덴마크	신문	—
핀란드	항공기, 정기구독 신문과 간행물	식료품, 무알콜 음료, 사료, 의약품, 책, 여객수송, 숙박시설, TV면허, 문화예술, 스포츠, 영화관 입장료, 수입예술 작품 및 예술활동
프랑스	—	의약품, 장애인 장비, 책, 호텔, 연회, 저작권, 박물관, 수송, 여행, 여객수송, 숙박시설, 농업, 책, 케터링 서비스, 신문과 물, 2년 이상 된 주거지에 대한 수리
독일	—	책, 식료품, 신문, 식물, 화훼, 장애인용품, 박물관, 동물원, 문화상품, 자선, 수송업
그리스	—	전기, 여객수송업, 음식, 수도, 장애인용품, 쇼입장권, 농업서비스, 호텔, 스포츠 시설, 장의업, 책, 언론, 저술가 및 예술가
아이슬란드	국제운송, 국제수송 선박과 항공기를 위한 연료와 장비, 조선	식료품, 신문, 책, 호텔, 온수, 집과 수영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전기와 연료유
아일랜드	책, 아동의류와 신발, 구강의약품, 의료장비, 식료품, 씨앗, 비료	신문과 정기간행물, 일정용도의 연료, 전기, 예술작업, 수의업, 농업, 자동차와 보트임대, 운전교육, 사진, 콘크리트, 휴일 숙박시설, 레스토랑/호텔 음식, 건축업, 부동산, 보수업, 쓰레기 매각, 식료품, 여행안내업, 영화/음악공연 입장료와 스포츠 시설
이태리	고철	식료품, 의약품, 장애인용품, 통신, 주간출판물과 숙박시설, 가스, 청소업, 재활에너지, 예술활동, 쇼, 운송, 부동산기업의 임대업
일본	—	—

	영세율	경감세율
룩셈부르크	—	숙박업, 문화나 스포츠 입장권, 농업, 저작권, 장애인용품, 아동용품, 주거용건축물의 건축, 전기, 책, 식료품, 연료, 의약품, 신문, 장의업, 주거지 수리업, 쓰레기 수거관련 서비스, 상수도, 스포츠시설, 예술품
멕시코	고무를 제외한 미가공 동물과 야채류, 우유, 상수도, 아이스, 미가공식료품, 농어업장비, 도매용 귀금속, 농어업, 캐비어류, 훈제연어, 도서 및 잡지, 상수도 공급	국경지역의 상품과 서비스
네덜란드	—	숙박시설, 농업, 책, 출장요리, 식료품, 장애인용품, 의약품, 신문, 여객수송, 물, 스포츠/박물관 등 입장료, 고미술품, 호텔 식사, 특정한 노동집약적 서비스
뉴질랜드	계속 진행되는 과세 사업에서의 공급, 귀금속 공급, 지방정부간 석유세의 배분	상업용 주택에서의 장기채류, 주거서비스에 동반하는 특정서비스가 공급가격의 60%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노르웨이	책, 신문, 항공기와 배, 수송업, 내륙수로운송업, 중고품 수송, 전기, 전기차	식료품과 공공방송
포르투갈	—	책, 신문, 식료품, 수도, 장애인용품, 의약품, 전기, 예술관 및 스포츠 입장권, 가스연료, 여객수송, 숙박시설과 음식점업, 농업용품 및 연료, 대체연료사용관련 장비
스페인	—	책, 하숙, 출장요리, 일반문화와 연예업, 식료품, 호텔, 음식점, 장애인용품, 의약품, 수송, 신문잡지, 쓰레기수거, 청소수선업, 장의업, 농림어업, 국내여객수송
스웨덴	상업용 항공기와 선박, 항공기 연료, 처방의약품, 정기구독 출판물	숙박시설, 식료품, 여객수송, 스키 리프트, 신문, 창작예술활동, 골동품 수입, 저작권, 도서신문잡지, 동물원, 스포츠, 박물관
스위스	—	물, 식료품, 의약품, 책, 신문, 비상업용 TV, 호텔, 농업생산과 관련한 특별한 공급
터키	—	농업생산물, 임대, 중고차, 신문, 책, 잡지, 기본식료품, 천연가스, 영화, 극장, 오페라, 발레와 교육
영국	자선사업, 아동의류, 식료품, 여객수송, 책, 신문, 가정의 오수와 물, 처방약, 의약품, 장애인용품, 신축주택, 주거용 및 자선용 빌딩	가정과 자선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연료와 동력, 특정 에너지절감자원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를 참고하여 김유찬(1998), 23쪽, <표 8>를 수정한 것

다. 문제점 및 평가

면세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우선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 중간단계의 사업자에 대한 면세로 누적과세현상(Cascading Effect) 발생한다(김유찬 1998). 따라서 소득분배의 역진성 문제만 아니라면 면세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OECD 표준 면세범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표준 면세범위에 비하여 넓게 면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개별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OECD 표준범위와 차이가 나도록 면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OECD 표준 범위보다 다소 넓게 면세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뉴질랜드의 경우 OECD 표준보다 현저하게 좁은 범위로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OECD 표준면세범위와 조금도 차이가 없도록 자국의 면세범위를 규정하는 나라는 전체 OECD 국가 중 단지 독일 및 룩셈부르크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부가가치세가 가진 소득에 대한 역진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제도 뿐 아니라 경감세율과 영세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전반적인 상황은위의 <표 9> 참조. 대표적인 사례는 위의 <영국의 사례> 참조). 영세율은 면세제도보다 훨씬 강력한 세 부담 감면효과를 가지는 것이며 경감세율도 표준세율이 각각 17.5%, 19.6%, 16%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5%, 5.5%, 7%의 경감세율을 가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 세율의 격차가 크면서 동시에 사업자에게 환급이 허용되므로 면세제도보다 세 부담 감면효과가 더 큰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하여 단지 면세제도만을 활용할 뿐이며 면세범위도 평균적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넓은 편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소득에 대한 역진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는 국제비교를 통하여 보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 이들 나라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우리나라의 단일세율 10%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17.5%, 19.6%, 16%(독일은 향후 19%로 예정되어 있음)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의 낮은 단일세율로 인하여 이들 나라에 비하여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최근 수년 동안 경감세율 및 영세율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⁴⁾

라. 개편방향

OECD 에서는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따라서 개별 국가들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OECD의 표준 면세범위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그러나 OECD의 개별국가들은 나라별로 입장 차이가 있으나 영국, 불란서, 독일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모습은 OECD 표준과 매우 다르다. 수평으로 우리나라의 면세제도와 OECD 국가들의 제도, 특히 영국의 영세율 및 기타 제도, 프랑

4) 이는 위의 <표 9>와 김유찬(1998)의 <표 8>을 비교하면 알 수 있음.

스의 의약품에 대한 저율과세, 기타 OECD 국가들의 경감세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그다지 넓은 것은 아니고 소득분배의 역진성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수준이 유럽국가들 보다 현저하게 낮으므로 당장은 그들 국가들처럼 영세율 등 강력한 소득역진성 완화정책을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언젠가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이 있게 된다면 이러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는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목표와 상관없는 요소가 개입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는 면세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여야 한다.

추가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면세분야 중에서 다음의 3가지 분야는 즉시 면세분야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① 일반 사설학원의 교육용역 :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공교육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설학원의 교육용역을 과세로 전환한다면 사교육비 증가의 우려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설학원의 교육비 지출은 소득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②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의 의료용역 : 현재 의료용역은 그 목적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로 되어 있으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면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형수술이외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 행위⁵⁾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면세를 허용할 수 있다.
- ③ 민간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철도 용역, 지자체 등의 음식점 및 공단 분양 등 : 이러한 용역이나 재화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3.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자 기준 조정방안

가. 간이과세제도 현황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자 납세인원 및 과세표준, 그리고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의 납세자 인원은 많으나 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5) 예를 들어 고가의료장비 사용비용 등

〈표 10〉 간이과세자 과세 현황

연 도	납세인원(명)			과세표준(억 원)			납부세액(억 원)		
	계	간이 과세자	비율	계	간이 과세자	비율	계	간이 과세자	비율
2001	3,709,035	1,814,614	48.92	15,153,891	266,125	1.76	279,376	760	0.27
2002	3,963,454	1,843,894	46.52	17,255,021	271,102	1.57	323,103	978	0.30
2003	3,994,665	1,773,804	44.40	18,826,686	252,766	1.34	333,495	1,038	0.31
평 균	3,889,051	1,810,771	46.56	17,078,533	263,331	1.54	311,991	925	0.30

자료 : 국세통계연보

우리나라의 전체 납세인원 중에서 간이과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 수준이다. 또 간이과세사업자 중에서 납부면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전체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약 38% 정도가 납부면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높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자신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까닭에 간이과세사업자 비율이 높다면 이는 문제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 영역에 안주하려는 자영업자들로 인하여 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이는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탈세의 온상이 된다. 또 부가가치세의 탈루는 소득세의 탈루로 이어진다. 사업자들의 탈루는 근로소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⁶⁾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업자들은 자신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간이과세사업자 영역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가? 1999년 연말을 기준으로 기존의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통계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1〉 부가가치세 사업자 형태별 납세인원

	1999년 27기		2000년 27기	
	인원(명)	비율 (%)	인원(명)	비율(%)
법인 일반과세자	232,474	7.8	278,657	8.2
개인 일반과세자	1,059,109	35.3	1,442,987	42.6
간이과세자	586,800	19.5	1,669,128	49.2
과세특례자	1,120,573	37.4	—	—
합계	2,998,956	100	3,390,772	100

자료 : 국세통계연보

6) 이는 근로소득공제의 지나친 확대의 원인이 된다. 다른 한편 EITC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의료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정확한 책정을 위하여도 마찬가지이다.

1999년 까지 전체 부가가치세 납세자 중에 37.4%를 차지하던 과세특례자가 2000년에 대부분 간이과세자 전환되고 1999년의 간이과세자중 약 1/3 정도만이 2000년에 일반과세자가 되었다. 1999년까지 과세특례와 간이과세의 기준이 연 매출액 4800만원 및 1억 5천만원이었고 2000년부터는 간이과세 적용의 기준이 연매출액 48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9년까지의 간이과세자는 2000년에는 전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어야 한다. 매출액의 평균적인 증가액을 무시하고, 1999년까지의 매출액 신고가 정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업자 인원의 2/3 정도, 즉 40만 가까운 사업자는 간이과세 영역에 안주하기 위하여 매출을 과거년도보다도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얼마나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지 사업자들 스스로 체감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박용오 2005).

다른 한편 간이과세자 사업자 중에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 부담이 각각 다르게 되는데 이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이 적정한지도 항상 논란의 대상이다.

다. 간이과세제도 개선방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자들이 매출규모를 누락시키기 힘들게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개인들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세의 세액공제를 더 지속적으로 강하게 실시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줄이려는 정부의 방향은 너무 시기가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병행하여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 4,800만원에 대한 조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 기준금액의 절대적 수준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이 매출액 기준액의 바로 아래 수준에 안주하려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액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 단계에서는 기준금액을 3600만원으로 그 다음에는 2400만원으로 낮추어 소액부정수 기준과 통일시키고 자연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없애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장부 등으로 납세순응비용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자라 하여도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과거보다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로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 동일한 매출금액이더라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각각 다르므로 수익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기적인 효과를 위하여는 다수 사업장을 가진 간이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변경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약국 등 전문 자격증 사업자 및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등도 일반과세자로 하며 또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V. 효율적이고 간편한 부가가치세의 추구

1. 과세단위의 변경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단위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⁷⁾. 법인세나 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물세로서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세원 관리 측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설비(ERP시스템)를 갖추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⁸⁾.

그러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하는 것이지 신고는 여전히 사업장마다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 국세청 전산망의 발달과 인터넷 전자신고의 확대 등으로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자 단위로 세원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며, 징세비용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복수의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간에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부매출액과 내부매입액이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는 바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의무를 사업장 단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징세비용이 발생하는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다.

나. 사업자단위 과세로의 전환

현행의 전사적자원관리체계를 갖춘 경우 뿐 만 아니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준에서의 관리가 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단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 뿐 만 아니라 신고도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조세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제4조 1항

8) 부가가치세법 제4조 2항-3항

2. 세금계산서제도의 정착

가. 세금계산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세금계산서 수수 기피

우리나라 기업의 세금계산서 등 매출자료 발행정도를 나타내는 매출과세표준 대 세금계산서 등 매출자료 발행정도가 대체적으로 부진한 편이고,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비율은 매우 낮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비율이 저조한 원인을 기업측면, 제도적측면, 유통구조측면 및 사회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로, 기업의 측면에서는 기업이 과세표준의 노출을 회피하고 또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하고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무자료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무자료로 매출을 한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기피할 경우에 그 기피한 매출분 세금계산서를 소화하고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달하는 방편으로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 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할 목적으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둘째로,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조세부담과 절차 면에서 특혜를 인정받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간이과세자로 안주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소규모 기업체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수수 기피심리를 발동하게 하며, 그 결과 부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로, 유통구조측면에서 보면 소규모형태의 제조와 도매기업의 난립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윤과 거래처의 확보수단으로 무자료 및 위장가공거래 행위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투매, 폭리, 다단계거래 등 가격이 다원화되고, 그 결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어렵게 되고 또한 변칙거래가 성행하게 된다.

넷째로,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조세에 대한 관념이 아직도 방적인 의무 또는 강제적인 부과로 인식되는 면이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수 기피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묵인 내지 방관하는 거래풍토가 남아 있다. 또한 전근대적인 생활관의 상존과 비과학적인 기업경영의 결과,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주고 기를 당연시하는 관습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 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실거래의 생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2) 세금계산서 부실거래의 유형

(가) 무자료거래(세금계산서 미수수)

무자료 거래란 실물에 대한 거래는 있으나 이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미수수하거나 실물거래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경우이다.

(나) 위장 가공거래(위장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사업자간 재화의 거래시 그 재화의 이동은 이루어 졌으나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비정상적으로 이

루어지거나 실제 거래한 품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은폐되어 위장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거래를 위장세금계산서 거래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장세금계산서상의 문제점은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되어 온 이래 줄 곳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세금계산서의 문제로서,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수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료상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료상이 발생하는 환경은 주로 유통과정이 문란한 품목에서 발생한다. 위장 가공거래 유형은 아래와 같다(서희열 2004).

- ① 명의 위장 : 실제의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이나 재산상 무능력자 또는 허위의 명의만 있는 비영리 단체 등 타인의 명의로 위장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등
- ② 업태, 종목 위장 : 실제로 영업하는 업태나 종목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
- ③ 사업장 위장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장소가 아닌 연락소, 하치장 등 고정된 장소가 아닌 곳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재화를 공급
- ④ 거래 위장 : 실제 거래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실거래자를 위장하는 경우
- ⑤ 기타의 부정 유형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금융대출, 거래품목위장, ③거래일자위장, 소매거래위장, 간이과세자 앞으로 자료분산, 백지세금계산서의 발행, 거래명세서의 폐기, 이중가액 거래 등

나. 세금계산서 등 수수질서 향상을 위한 방안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의 수수가 전제되는 세제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의 수수가 정상화되면 부가가치세제는 완전한 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 세금계산서 관련 개선방안

㉠ 간이과세자의 점진적 축소

일반과세자 중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존재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등 수수질서의 정상화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비율을 높임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고의무 및 가산세 부과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장의무는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 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⁹⁾.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장부기장 및 보관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기장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완화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3항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만 하여도 되고 또한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의무도 강제하지 않으므로 기장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기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제도 없으므로 기장의무 자체도 자칫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율에 의한 세경감 혜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간이과세자에게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기장의무를 면제하고 교부 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 또는 영수증을 보관 만하게 하더라도 보고의무는 이행토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수증의 과세자료 활용방안

현재 과세관청은 영수증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영수증을 발행하는 간이과세자가 전체 납세자 중 57.5%나 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영수증의 관리와 과세자료로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영수증의 관리와 과세자료로의 활용방안으로는 현재 쓰레기봉투의 관리와 같이 영수증을 공급하는 인쇄업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행정비용발생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에 채택하였던 세무서에서 영수증을 검인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또는 일정규모 이상자(예 : 간이과세자 이상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하여금 영수증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면세사업자의 자료 활용방안

(가) 모든 계약서의 관인계약서화

모든 면세사업자의 계약서를 관인계약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수입금액의 포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업무대행 단체 등의 자료제출에 대한 제재

현행 개별세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업무대행 단체 등으로 하여금 제반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제출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4) 세금계산서의 양식 개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양식으로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인 양식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세금계산서의 표준양식을 예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의무적으로 수취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3. 매입세액공제제도

가. 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매입세액불공제에 관한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¹⁰⁾.

매입세액불공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현행 법령의 체계를 보면¹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또한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하는 경우 즉 공급시기가 착오의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례도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아니하다¹²⁾.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를 인정하는 경우 거래질서의 문란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의 인정에 해당되는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정덕주 2005).

또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경우 자가용의 사용이 일상화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사업에 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나. 매입세액공제의 개선방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규정하고 또한 범위를 축소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공급시기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에 있어서는 제화나 용역의 공급과 부가가치세의 징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만 그 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지 못하였고 매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로 다시 교부한 경우로서 동일거래에 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가 비록 영업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임이 명백하며, 또한 접대비 등의 지출도 접대 교제 사례 등에 지출한 소

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동시행령 제60조 2항. 매입세액불공제는 다음과 같다. (1)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래차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4)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5)접대비 지출 (6)면세 제화 또는 용역 (7)등록전 매입세액.

12) 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 8097 판결,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

비성 경비이기는 하나 기업의 경영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지출인데도 이들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영업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개인적 지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는 근본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예상하는 간접세로 그 매입세액공제는 전 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중복부담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점대비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기본전제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이중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기업의 점대비와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하여야 할 것이다.

V. 주세 및 담배소비세

1. 주세

최근 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이를 감안하여 주세율 구조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장근호 2005).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알콜 섭취량은 고도주 음용은 러시아 등 동구국가에 이어 세계 4위이며 최근 20년간 전체 인구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 음주자 및 청소년 음주율도 크게 증대하였다고 한다. 동 연구에서는 음주로 인하여 지불하는 총비용은 2003년 기준으로 약 17조원(GDP 대비 0.7%), 개인이 아닌 사회적 피해는 연 약 5~8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음주문화가 형성된 배경에는 다른 요인도 있으나 저렴한 주류가격과 용이한 접근성 등의 음주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세율 정책에서 서민이 즐겨 마시는 술이라는 국민적 정서와 사교의 촉매제적 역할 등 음주의 순기능도 감안되어야 하겠지만 고알콜주인 소주가 제세 포함 병당 424원에 불과한 세율로 말미암아 생수가격을 약간 상회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황은 왜곡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주류의 대체 탄력성 특히 저가 제품으로의 소비전환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외부불경제 감축을 위한 주세율 개편에서 전반적인 세율인상이 불가피하다.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하여는 주세율 150% 정도, 맥주 120% 정도, 과실주 등은 70% 수준, 그리고 탁주 50%의 세율 체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담배소비세

주세와 더불어 담배는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담배세에 있어서는 담배 소비억제와 이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에 정책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연자의 건강악화 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미치는 신체건강의 피해, 화재의 위험 등 외부비용의 발생을 감안할 때 현행 담배가격은 이러한 외부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아직도 담배세는 인상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세와 담배소비세는 세율인상을 통하여 세수증가와 국민건강의 목표 중 적어도 하나는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없는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VI. 기타 특소세

1. 현 황

특별소비세는 지난 1977년 단일세율(10%)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도입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주로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고가품, 사치재, 또는 오락·유흥장소였으며, 기존의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및 입장세 등 소비세항목들 중 일부를 특별소비세로 흡수·통합한 것이었다. 특별소비세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기를 거치면서 소비세제의 역진성보완이라는 역할을 다소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특별소비세가 갖고 있었던 누진성은 경제발전이 따른 소득수준의 전반적 상승, 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동안 대부분 상실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두 차례 개편된 바 있다. 실제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과세대상 재화들은 고소득층만이 소비할 수 있는 사치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생활필수품화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경우 필수재 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는 오히려 세부담의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별소비세는 지난 1999년과 2004년 두 차례 대폭적으로 개편된 바 있는데, 1999년에는 대다수의 가전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비과세를 단행하였으며, 2004년에는 특소세 대상품목 32개 가운데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였다.

2. 문제점

가. 과세대상의 범위 문제

과세대상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과세대상의 크기가 적정한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보다 과세대상 품목을 넓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현재 과세대상 품목으로 적당하지 않은 품목이나 서비스에 과세되거나 혹

은 과세대상으로 적절한 품목이나 서비스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두 가지 문제 모두 세율의 평균수준과 세율의 구조 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먼저 현재의 과세대상 품목 크기와 관련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 보다는 과세대상 품목이 대체로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가능한 한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클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데다가 직접세 의존도가 높지 못하여 특별소비세가 재정수입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기인한다. 다음으로 과세대상 선정의 타당성 문제는 경제여건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과세대상의 조정(추가 또는 삭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세부담의 공평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과세물품인 화투, 트럼프 등 사치성이 거의 없거나 과세실익이 거의 없는 품목에 대한 계속적인 과세문제와 재정수요의 조달 측면보다 사치성 소비억제 측면을 중시할 경우 가구, 향수류, 시계, 귀금속제품 등 생활필수품화된 물품의 과세 타당성 문제 그리고 골프장, 투전기 설치 장소, 카지노를 과세장소로서 과세하면서 당구장, 볼링장, 영화상영장을 과세하지 않는 형평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나. 탄력세율과 잠정세율문제

탄력세율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탄력세율제도는 그 도입목적이 경기정책과 관련한 신속한 수요조절에 있었으나 실제의 적용실태를 보면 그 지속기간이 대체로 1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진정한 의미의 단기적 수요조절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탄력세율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잠정세율제도는 그동안 잠정세율의 적용대상 품목의 선정과 실제 그 효과면에서 타당성이 있었는가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하며, 되도록이면 신규과세 품목에 한해서 잠정세율이 적용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3. 개선방안

가. 과세대상의 합리적 선택

먼저, 과세대상 크기의 적정성 문제는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상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가능한 한 현재보다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데다가 직접세 의존도가 높지 못하므로 특별소비세가 재정수입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지 않을 수 없고, 에너지 절약, 수입억제 등 특별소비세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정책목표가 다양한 까닭에 과세대상이 클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세수 기여도가 미미하고 사회통념상 사치성이 낮은 과세대상품목부터 점진적으로 과

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대상 선정의 타당성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기술수준이 빨리 변화함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도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동안 경제, 문화적 여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필수품화된 물품 녹용, 로얄제리, 향수류 등과 사회통념상 사치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사진기, 시계, 가구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부담의 형평 측면에서 유사물품을 추가하여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세수효과를 과세대상 또는 세율의 조정으로 감소되는 세수와 상계시켜야 할 것이다.

나. 탄력세율 적용기한 제한과 잠정세율 적용 예시

광의 면세제도로서 세율경감제도인 탄력세율제도와 잠정세율제도도 그 운영에 있어서 채고해야 할 점이 있다. 그 동안 탄력세율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표출된 특징으로서는 적용기간이 모두 1년 이상의 장기인 점 및 일부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탄력세율제도를 장치한 이유는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조절을 통하여 경기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본래의 취지가 있는 것인 바, 탄력세율이 장기간 적용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제도의 신축성이 현저히 저하되게 됨은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는 가급적 그 적용기간을 1년이 초과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논거로서는 경기대책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조절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탄력세율이 적용되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차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탄력세율제도에 의하여 인하조정된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는 이를 기득권화하여 계속적으로 인하조치된 세율을 적용받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탄력세율제도가 경기조절목적 이외의 요청에 의하여 적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전 품목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경기조절에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잠정세율제도는 신제품의 개발조기에 일정수준 이상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원인을 제공하고 내수기반의 확대를 통하여 향상된 경쟁력에 의하여 수출증대의 촉진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과거의 운용실태처럼 제품이 시장에 출고된 지 수년이 경과된 뒤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잠정세율로 인한 기술개발 유인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제품개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잠정세율의 적용을 예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I. 결 론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국제적인 조세구조 변화의 특징이다. 소비세와 소득세 분야의 조세는 어느 한쪽이 논리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조세를 통하여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통한 재정수요의 조달을 고려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경

제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OECD에서는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따라서 개별 국가들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OECD의 표준 면세범위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그러나 OECD의 개별국가들은 나라별로 입장 차이가 있으나 영국, 불란서, 독일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모습은 OECD 표준과 매우 다르다. 수평으로 우리나라의 면세제도와 OECD 국가들의 제도, 특히 영국의 영세율 및 기타 제도, 프랑스의 의약품에 대한 저율과세, 기타 OECD 국가들의 경감세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그다지 넓은 것은 아니고 소득분배의 역진성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수준이 유럽국가들 보다 현저하게 낮으므로 당장은 그들 국가들처럼 영세율 등 강력한 소득역진성 완화정책을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는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목표와 상관없는 요소가 개입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는 면세에서 제외함으로서 세수증대와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이로 인한 탈루문제에 관하여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자들이 매출규모를 누락시키기 힘들게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들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세의 세액공제를 더 지속적으로 강하게 실시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유찬. 2006.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배경과 전망”. 재정포럼 2006년 4월호 : 38-48.
- 김유찬. 1998. 「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박용오. 2005. “간이과세제도, 이제 개정해야 할 때이다”. 계간 세무사 2005년 겨울호 : 66-74.
- 서희열. 2006. 「소비세제법」. 세학사.
- 서희열. 1998. “소비세제의 평가와 개편방안”. 세무학연구 12호 : .
- 장근호. 2005.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공청회 발표 자료.
- 정덕주. 20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2권 제4호 : 123~145.
- 영국 재무성 면담자료.
- 프랑스 재무성 면담자료.
- OECD. 2004. Consumption Tax Trends.

Consumption Tax Reform

Yu-Chan Kim^{*} · Tae-Hwa Yoon^{**} · Hi-Youl Suh^{***}

—〈Abstract〉—

The increasing portion of consumption related tax base is one of the major trends of tax reform in the recent world. Theoretically it is hard to compare the advantages of direct taxes and indirect taxes. But if any nation has a strong fiscal demand and she has to finance it with tax revenue, the VAT will be certainly one of the best candidates. In any case the economic effects of increasing VAT rate must be seriously considered. In fact our VAT exemption areas are broader than OECD standard. But the individual OECD countries as England and France have also far different positions from OECD standard. If we compare our position with broad zero rated areas of England and reduced rated goods and services of other OECD countries, we can hardly argue that our VAT exemption areas are broader than that of those countries. Our concern for the regressive character of VAT burden distribution is not so sufficient.

<Key words> tax structure, VAT, fiscal demand, exemption, OECD Standard, zero rate, reduced rate, regressive VAT burden

*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 Professor, Kyungwon University

*** Professor, Kangnam University